

제41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8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상정된 안건**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 2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 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 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 4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 8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12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 13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 16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	17
1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51) .....	20

---

(10시31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일정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절차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0시32분)

○**소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이 출석 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도입 등 해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바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현황과 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고 지금 수산기자재 업체는 영세하며 기술은 선진국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법적인 기반사항에 있어서는 각 수산기자재별 개별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육성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수산현장의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통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수산기자재의 종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내용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고 총 4개의 장,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조에서 주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5조에서 21조에서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24조에서는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과 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 관계부처 의견과 제정안 심사 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하단 조문별 관계부처 의견 내용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조문 수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제적 측면에서 명확성 제고,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기자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해수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산기자재 육성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안 7조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기존 조직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자료 8페이지 하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역시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된 제24조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별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하단 지자체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2조의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 조성과 동일하게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조문 내용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은 제8조 신기술 수산기자재에 관한 사항이고 품질인증에 관한 제16조의 조문은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수산업의 자동화·기계화가 절박한 시점입니다.

동 법률 제정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규격화, 보급 확대 등 산업의 육성을 물론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개발 등 스마트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의 일부 미비점 수정과 관계부처 제시 의견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토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대표발의한 조승환 의원이 새로 개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제정법인 만큼 또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는 부분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위원님.

○이병진 위원 이병진 위원입니다.

저도 개괄적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육성과 스마트화라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각 부처와 조속한 시간 내에 합의 잘 되고,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더 면밀히 적확하게 보완조치가 돼서 조속히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10시39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2항부터 4항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해양수산법안소위 심사자료 2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권 내용 중 자료 3페이지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선원 근로기준에 여성 선원의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74조의2 조문에 대한 내용은 자료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신한 여성 선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이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국적선원 현황에 여성이 3만 587명 중에 281명이어서 지금 0.92%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여성 선원의 수를 좀 증가시키거나 확대할 해수부 차원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3페이지에 있는 선원 현황하고 6페이지에 있는 선원 현황이 좀 다른데 3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이 기준이 언제인 건가요? 여기는 3만 587명으로 되어 있고 6페이지에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3만 18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약간,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통계 기준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3페이지는 23년 기준이고요, 6페이지는 22년 기준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여성 선원 관련된 부분들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권익향상도 되고 또 근로기준법도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좋고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 이외에 해수부 차원에서 여성 선원을 좀 더 증원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지금 사실 선원 자체가 계속 모집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선원들 권익향상이 필요하고 직업안정 차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됐습니다.

그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성 선원들 확대정책 조금 더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또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계속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이어서 선원법 두 번째 사항으로 6페이지 내용입니다.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의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과 개정안 내용에 대한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측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에 대한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조 제목을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에서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로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행일에 대해서는 다른 개정안과의 통일을 위해 3개월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선영** 이어서 자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원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면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유족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사항부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비의 지급 목적이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원법상의 선원에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타 법률에서 용어 정비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에 대해서 해수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10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입니다.

유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 역시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공포를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

는데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0년 남해해경청 내 장제비 지원대상 63건 중에 36건인 43%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수부의 적극적인 홍보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 맞춰서 홍보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선원노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이게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 보게 되면 유족들이 다 와 있는데 어느 분이 실제 장례를 지냈다고 할 것인지 또 유족의 범위는 어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런 불명확함을 해소할 무슨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지금 유족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유족이 청구할 때는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청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철현 위원** 이것을 원칙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일반적인 상속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원래 장자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법원칙이 그러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사실은 선원분들께서 나가시고 유족이, 실제로 장례를 지내는 분들이 사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칙에 따라서 장자가 지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가족관계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다른 법률도 그렇게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주철현 위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뻔히 예상되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춤춤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10시4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국가가 설립하는 해양과학관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추가하는 26조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협행법에 따라 사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입니다.

18페이지 하단의 내용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법을 심사하시는 때의 23년 3월 내용입니다.

향후 설립될 법인에 대해서 법률 제명 변경과 법체계에 관해서 부처에 보고토록 한 바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앞에 말씀드린 그 박물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국립해양과학관이 몇 개

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지금 울진에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설립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울진에 있는 것은 그냥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이러면 될 텐데 국립해양과학관이고, 이 미래해양…… 이번에 생기는 것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청주에 생깁니다.

○**주철현 위원** 청주에 생기는 것은 미래해양과학관 이렇게 하고, 또 생기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것은 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국립해양과학관이 죽 있으면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청주는 국립청주미래해양과학관 이렇게 하셔야지, 지명을 붙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을 또 설립할 때는 소급해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칭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명을 붙여서…… 기왕에 있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그냥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이렇게 바꾸고 청주는 국립청주미래해양과학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지명을 붙여서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볼 때 법제처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제가 한 말씀……

○**주철현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사실 일단은 국립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당시에는 미래해양과학관이 이렇게 추가로 설립된다라는 그 생각을 못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립해양과학관이 울진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지역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부분을 지역명을 두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지역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다른 입법 사례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과기부나 그렇게 한 경우도 기존에 있는 그런 과학관이나 박물관들 명칭은 건드리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례에 따랐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물론 기왕에 쓰던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국립해양과학관이 두 개가 있으면 지명을 고쳐서 병렬적으로 쓰는 게 낫지, 먼저 생겼다고 거기는 그냥 국립해양과학관이고 다른 지역은 지명을 붙이고 다른 것을 붙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렇게 평계 대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다 놓고 물어보세요.

울진에 있는 것은 진짜 국립해양과학관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학관 이렇게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다른 게 또 하나 생기게 되면 미래 못 붙일 거고 그때는 이제 여수에 생기면 여수해양과학관, 국립여수해양과학관일 것 아니에요. 울진은 지명 안 붙이고 여수만 지명 붙이면 여수라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것 아니에요?

좀 그렇게 균형적인 사고를 하시고 정책을 펼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참

정말로…… 솔직히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렇게 지명 붙이는 것은 나는 해수부 처음 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 부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은 지명을 못 바꾼다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산도 아니잖아요, 울진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까, 제가 좀 정곡을 찔러서?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것은 또…… 아니, 뭐 지역 간에 또 뭐 그렇게……

○**주철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국립해양과학관이면 다 국립해양과학관이지 어떤 것은 그냥 국립해양과학관이고 어떤 것은 울진해양과학관 이렇게 쓰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하는 것을 기왕에 했던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은 울진해양과학관으로 바꾸고 청주 해양과학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차관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지금은 사실 국립해양과학관,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두 군데 있으니까 이제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후에 해양과학관이 추가적으로 설립되면 그때 그 과정에서 지역들하고 이 부분은 좀 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하고 또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궁금해 가지고.

과학관하고 박물관의 차이가 어떤 게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전통 유물들 전시가 기본 목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문대림 위원** 과학관은?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과학관은 아무래도 지금 과학기술들 전시하고 교육하는 기능이 주된……

○**문대림 위원** 제주에는 과학관이 어울릴까요, 박물관이 어울릴까요? 아까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아니……

○**문대림 위원** 차관님께서 바로 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그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아니,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문대림 위원** 과학관이 어울릴까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것은 어떤 부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같이 의논 좀 합시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이병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평택에도 평택해양박물관을 7000억 투자받아서 짓는 54만 평의……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평택 자가 꼭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저기 이거 정부에서 못 받아들이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것 뭐 이름 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주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주철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경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의 다 지어졌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설립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이것은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 명칭을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막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명칭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지명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울진에 지금 국립해양과학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울진분들이 울진 넣어 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견 수렴하는 데 좀 시간이 아무래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자기 지역의 지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하지요,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것은 사실 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이 울진해양과학관, 해양과학관이 이제…… 해양과학관 또 미래해양과학관 이 부분들은 또 지역에서 사실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칭들이 설정된 부분이라서……

○소위원장 조경태 어쨌든 그런 의견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병진 위원님께서 그리고 문대림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지역에도 하나씩 다 해 주세요.

○서천호 위원 우리 사천 지역도 있습니다. 사천, 하동……

○주철현 위원 여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아, 사천도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이런 것을 좀 남발한다는 느낌이 안…… 이게 다 국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주는 사실은 해양하고 좀 거리가 먼 도시잖아요. 한다면 제주도가 제일 어울리는데.

○문대림 위원 그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청주에서 하게 된 것도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아무래도 충북의 도민들이 좀……

○**소위원장 조경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관님, 제 생각에는 정치권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해양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는 도시들이…… 그게 맞는 거지요. 내륙에는 또 많은, 과학관이라든지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할 때는 좀 신중의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부대의견에 담든지,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 저희들이 좀 지역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금 안 바꾸면 언제…… 못 바꿔요. 지금 정리해 주셔야지.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아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의견 물어보세요. 저도 국립해양과학관이 울진에 있다는 것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다 국립해양과학관이 있으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지 울진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 의견 물어보고, 청주에도 물어보면 청주 넣는 걸 좋아하지 미래해양과학관 이라면 모르잖아요. 누가 내륙에 해양과학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 의견 수렴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꼭 오늘 이게……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부분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정의결하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양수 위원** 부대의견 달면 저 사람들 그냥 막 해 버려요.

그리고 자꾸 급하다는데 그렇게 급하면 일찍 갖고 와야지요.

○**송옥주 위원** 9월에 법안소위 다시 열 수 있으니까, 9월에 다시 법안소위에 올릴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주철현 위원** 2주 만에 열리니까요.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11시01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무역항의 출입 신고 제외 대상에 어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항어선이 무역항의 항·포구 출입 시에 관리청과 신고기관에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선박입출항법상의 신고제외 대상에 어선을 포함하여 법 적용 간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과 어선안전조업법상의 신고 현황은 28페이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운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2020년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으로 내항어선의 출입신고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무역항은 출입신고에서는 내항어선을 제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은데.

○**이양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속도가 다 빨라져 가지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11시03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등의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 대상에 어촌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1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촌 청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촌 청년은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관련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정부는 청년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대상에 어촌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차관님, 지금 사실상 어업인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걱정인데 반드시 요건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청년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업을 할 의사가 있는 분 같으면 누구든지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촌에 거주하는 청년만 되고 어촌에 앞으로 이사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세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

○**주철현 위원** 지금 어업인들이 부족해서, 어촌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귀어·귀촌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자체에서 열심히 지금 모으고 나르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해수부에서는 딱 와서 주소를 옮긴 사람만 교육시키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올 사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은 사실 귀어·귀촌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어촌에 있으면 더욱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또 혹시.....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어업인과 어촌 청년을 비교한 표가 있네요. 청년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이게 꼭 농촌에 거주한다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도 화성갑 지역인데 도농복합지역이고 실제로 농사를 하지만 도시화된 아파트나 주변 지역에 사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디에 거주하기보다는 어디에 종사하거나 어떤 의사가 있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기준에 있는 개념에 이것 지금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도시지역 청년은 현재도 되고요. 추가로 어촌 청년들에 대해서 이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거를 어촌 청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청년으로 하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주철현 위원** 제한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촌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고 자꾸 도시민들한테 우대를 하고 도시민들이 귀어·귀촌을 하면 막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박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민들이 농어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어촌 청년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가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중복 지원에 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청년농어업인에게 자금이나 컨설팅 그리고 기술 교육,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후계인들은 50세 이하가 후계에 해당이 되고요.

○**문대림 위원** 나이로도 중복될 수가 있겠지요.

○**이양수 위원**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차관님. 사각지대라고. 뭘 모르고 앉아 있어.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후계자들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은 지금 종사하지 않지만 종사할 의향이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잘해 주자는 건 좋습니다.

○**주철현 위원** 2조 정의에 보니까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청소년만 돼 있는데 좀 더 늘려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에 사는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왕 고치는 김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

○**주철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교육훈련사업인데, 교육시키는 것0 다른 것 지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구든지 교육받게 해 줘야지요, 뜻이 있는 사람은.

○**소위원장 조경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법률에 있는 조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를 시행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잘 참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문에 있는 사항은 어쨌든 어촌 청년을 많이 잘 육성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잘 담아내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이나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법을 시행하실 때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드린 부분과 관련돼서.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11시11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정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미래수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대상에 청년수산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은 미래수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대상에 후계수산업경영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청년수산인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적용 대상인 청년수산인과 관련하여 수산업의 경영 또는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취업 할 의사가 있는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좀 전 법안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수산업인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육성·지원 대상에 청년수산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청년수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제주도에 청년수산인들 많잖아요. 제주도도 한번 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11시13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9항 이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 중 해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어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제2조(정의) 제2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직불금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어촌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어항 배후지역이 공업화 등으로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어민 중에서 어항 인근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요건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시에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전국 10개 시도, 72개 동)에 거주 중인 어업인 3265명 정도가 직불제 지급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부처로부터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하 44페이지 하단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체계상의 혼란 방지와 해수부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어촌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도록 그대로 두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의 근거조문인 제18조의2에 해당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이라는 문구를 미반영하는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의견 제시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포함하려 하는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은 이미 상업·공업기능을 주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변모한 곳이 많아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 현행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하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행일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고, 부칙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칙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우선 적용규정을 두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조의2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될 경우는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셨는데 수정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게 어촌과 어업에 대한 현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이라든지 취지에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촌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농촌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직불금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여기도 보이지만 소규모라든지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농촌 같은 경우에도,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업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이런 배후지역 같은 데가 있는데, 농업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부처 의견처럼 뭔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항 배후지역에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의 소득은, 사실은 직불금을 주는 부분들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육성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작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를 또 보완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 어촌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소득이 소규모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산업·어업에 관련된 직불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이 대상 1208명에서 2171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답변 좀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 예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는 연간 한 16억 내지는 최대치를 따져도 한 25억~26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이 지금 295억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불금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어가 직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촌 거주 어업 종사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기본적인 충족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예컨대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그 형평성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농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농업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어가 직불에서 제외되면 또 농촌 거주요건이 없는 면적직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업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어가 직불 외에는 그러한 대안이 되는 직불이 없기 때문에 어촌에 준하는 지역을 조금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어떤 일이 관지(一以貫之) 집요성이 낳은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농업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업인은 2000만 원이면 우리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범위를? 또 대통령께서는 직불금 5조 원으로 늘린다고 언제? 2027년도에, 그렇지요? 발표했던 말이지요. 또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도 마찬가지로, 속초는 바로 어촌하고 다 연접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옥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옥주 위원** 저요?

○**소위원장 조경태** 예.

○**송옥주 위원** 바닷가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시나 봐요.

○**서천호 위원**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왜냐하면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소득은 낮은데 공업도시, 상업도시지구라는 그 이유로, 사실 그분들은 도시 빈민들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되게 소득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의 격차를 좀 해소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이 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농해수위인데 지금은 해수법안소위니까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면 농림법안소위 할 때에는 또 농촌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넓혀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처에서 다 수용 가능한가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률이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소위원장 조경태** 예, 그건 농촌에서 다루어야 될…… 좋은 말씀입니다.

○**송옥주 위원** 한쪽을 해 주면 다른 쪽도 이게 다 확인이 되니까, 농촌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농촌이 어촌보다는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타당성이나 논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를 해 주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 관련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주철현 위원** 일단 이래 놓고 법안 개정안을 내십시오, 농업 분야.

○**이양수 위원** 제가 설명을 좀……

○**소위원장 조경태**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농촌하고 어촌은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농업하고 어업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 해수부 쪽에서 농림부에 있는 것을 ‘저기 있으니까 우리 해 달라’ 이러는 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건 상당히 많고 사실 농촌 쪽에서 어촌 쪽으로…… 어촌 쪽은 제도가 아직 좀 미비하고 특히 어민 숫자가 적어 가지고 농민에 대한 혜택보다 어민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해수부 법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

농림부 법에 이것 반영해 달라'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미 있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직불금 제도 지금 이렇게 마련돼 있고 아래 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촌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사실 입법 미비사항이에요. 우리가 직불제를 급히 만들면서 이것도 줘야 되는데 못 준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취지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양수 위원님을 믿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옆의 문대림 위원님도 제주도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51)

(11시24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0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조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내 다이빙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에 체시법에 따라 안전 및 위생기준이 관리된다는 점에서 실내 다이빙풀에 관한 입법 공백의 해소 취지입니다.

다만 수중레저사업의 유형이 현재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이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교육업에 대해서는 수중레저교육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와 개정안의 안전관리요원을 구분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조항의 신설 목적과 첫 번째, 두 번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해수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 52페이지부터는 해수부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간에 수중레저사업이 지금 주무부처가 해수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상레저는 해경으로 돼 있고 특히 해양에서의, 해상이든 해중이든 간에 안전관리 업무는 해경이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실제 해수부는 이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관리할 인력과 예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법안 주무부처를 해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입니다.

지난 회기에 폐기된 정부안은 시장·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이 발의됐었고 주철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안은 해경청에서 상당 부분 안전관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해경청하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지금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해경청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정말로 시장·군수들보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인데 대책이 없어요. 재판받고 그래야 돼요, 사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인 해경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도 일정 부분 해경에다가 양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 산업 활성화 업무 쪽은 해수부에서 하고 안전관리 업무 쪽은 해경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 안전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부에서 잘 살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내는 데 좀 더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이병진 이양수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